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의의

-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이해 증진과 자율 준수를 위해 각 사업자들이 도입하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함.
- “자율준수 편람”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회사의 자율준수 편람을 말함.

1.2.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회사”란 “동국제강”을 말함.
- “계열회사”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회사의 그룹사를 말함.
-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함.
- “거래업체”란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협력업체, 공급업체를 말함.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직원을 말함.
- “고객” 또는 “실수요자”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수요자를 말함.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함.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회사의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
- “공정거래 관계 법령”이란 상기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이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 기관의 지침 및 고시 포함.

2.2. 핵심 8대 요소의 이행

2.2.1. 대표이사의 의지 표명

-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 의무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방침을 전 직원들에게 선언해야함.
-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결의로써 회사의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며, 필요 시 자율준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함.
-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관리자와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 시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또는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문화의 확산에 노력해야함.

2.2.2.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 법령 및 회사의 내부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관리자 중 선임하되, 생산·영업·구매·조달·표시·광고·고객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의 제·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2.2.3.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개정

-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위 및 한국 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협력하여 사내 자율준수 편람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준수 편람을 개정할 수 있음.

2.2.4. 교육 시스템

- 자율준수 관리자는 회사의 직원들이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며, 필요한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비해야함.
- 자율준수 관리자는 대표이사 및 필요한 부서 단위로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함.

- 자율준수 관리자는 교육 시스템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 종료 후 5년 간 유지해야함.

2.2.5. 감시 및 감독 시스템

- 자율준수 관리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정거래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회사의 제반 활동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며 최고경영자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함.

2.2.6. 위반에 대한 자율규제

- 자율준수 관리자는 회사의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 해당 직원이 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 최고경영자 또는 해당 부서의 장 등과 충분한 협의 후에 사안에 따라 관련 업무로부터의 격리, 경고, 업무 정지, 감봉, 전직, 해고 등 필요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함.
- 자율준수 관리자는 필요 시 법 위반 사실의 조사 내용 및 관련 자료와 문서를 기록, 보관 유지해야함.

2.2.7. 문서관리 체계의 구축

- 자율준수 관리자는 자율 준수의 시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문서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함. 공정거래 관계 법령에 위반 시 경쟁 당국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사의 문서 관리는 공정 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8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문서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2.2.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자율준수 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함.

II. 회사의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1. 회사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 1.1.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는 하도급법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됨에 주의해야함.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의무로 서면 교부 등 9가지 의무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등 13가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됨.
-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① 우월적 지위 (자기의 거래상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것)에서 ② 남용 (정상적인 상·관례와 비교할 때 부당한 행위)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1.1.1. 우월적 지위의 개념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란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의 지속이 곤란해지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 경영에 상당한 장애를 낳기 때문에 결국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요청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이익을 주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함.
- 우월적 지위를 판단함에는 사업자와의 거래 의존도,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선 변경 가능성, 사업 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

1.1.2. 남용 행위의 개념

- “남용”이란 정상적인 상·관례와 비교할 때 부당한 행위를 의미하며, 하도급법에서는 일방적인 하도급 대금의 인하(부당 감액) 등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가 하도급법 상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1.2. 제조 위탁 시 하도급 이슈 유형

1.2.1. 배송 비용의 부담

- 원사업자가 필요할 때 맞추어 생산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종전에 1회성으로 납품되었던 제품을 여러 번 나누어 납품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품 운송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유의점	행동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를 행하는 경우, 거래 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종전과 같은 하도급 대금으로 납품시키는 때에는 법 위반 우려가 있음. - 분할 납품 시 운임 부담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비용 산정 등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충분하게 협의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에 포함된 운송 경비에 대하여 1회 운송량과 운반 형태 등 조건을 가미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 경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운송 요율 결정 시, 도착지, 납품의 빈도 등 전제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양 당사자 간 충분히 검토한 후 합의 하에 요율을 결정해야함.

1.2.2. 원재료 가격 등의 가격 전이

- 원재료 등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를 원사업자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전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유의점	행동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를 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가격으로 납품을 요구하는 때에는 법 위반 우려가 있음. 가격에 대해 객관적인 비용을 산정하고, 양 당사자 간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 등의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경비 동향 등을 파악, 명확한 산출 근거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후 합리적인 단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산정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1.2.3. 일방적인 원가 저감율의 제시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예산 단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이하의 단가,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유의점	행동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산 단가만 기준으로 하여 통상적인 대가보다 현저히 낮게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하도급 대금 인하에 해당할 수 있음. 발주가 이루어진 후에 원사업자가 예산 단가, 가격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감액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단가, 위탁 대금에 대해 품질과 반품의 대응 조건을 가미하면서, 양 당사자 사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리적인 제품 단가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사업자는 사내 기술 및 조달 담당의 연휴(連携)를 긴밀히 하고, 제품 가격 설정의 근거인 견적 예정 수량과 실제 발주량을 확인하여, 내부의 예산 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함.

1.2.4. 거래 조건의 변경

- 원사업자가 일정량을 생산하는 것을 전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단가 견적을 받은 후, 실제 발주 시에는 견적 대비 적은 양을 주문하며 일방적으로 견적 시의 단가를 적용시키는 경우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가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견적의 예정 단가(이 단가는 소량생산을 하는 경우의 통상의 대가를 대폭 하회하는 것임)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고 실제로는 견적 시보다 적은 양을 발주하는 것은 일방적 하도급대금 인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발주 시 생산량의 변화가 생겼다면, 실제 생산량에 근거한 비용 계산으로 양 당사자 간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원사업자가 필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발주 시 결정한 수량을 하회하여 납품 수량으로 발주를 중단한 경우, 부당한 급부의 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함. 동시에 발주가 중단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하회하는 금액으로 지급한 경우, 부당한 대금 감액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

1.2.5. 견적 시 조건 변화에 의한 가격의 재검토

- 실제 발주 시 납품 수량이 견적 때의 수량보다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제품 단가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제품 단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2.6. 수령 거부, 검수 지연

1.2.6.1. 수령 거부

- 수급사업자가 제품의 발주를 받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담당자 휴가로 인한 수령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수령 거부 상황에 놓일 수 있음.

유의점	행동지침
- 목적물을 지정된 납기일에 납품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하면 수령 거부에 해당될 수 있음.	- 납기일 관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일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확실한 납품 가능 일자를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2.6.2. 검수 지연 (지급 지연)

- 프레스 등에 필요한 금형, 목형, 기타의 형을 검수할 때 기술적으로 판단이 곤란하여 여러 번 다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술적 관점에서는 해당 금형을 시험 중인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이미 금형을 사용하여 목적물 제조를 행할 수 있음. 이 때 원사업자가 금형 검수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 가능함.

유의점	행동지침
- 원사업자는 수검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금형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을 유의해야함.	- 발주 시의 사양과 수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해 이 기간 내에 수검을 종료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검의 결과, 원사업자가 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재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검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금형을 수령한 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을 유의해야함.	
- 원사업자가 필요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급부 수령 이전에 발주 변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함.	

1.2.7. 유상 지급 원재료의 조기 결제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임가공 대상물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구매하고 이를 임가공하여 다시 원사업자에게 납품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유상 원재료의 구매 대금을 임가공 작업 시기 대비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거나, 임가공 대상물 납품 완료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임가공 대금보다 조기에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유의점	행동지침
- 유상 원재료의 대금을 최종 목적물의 제조 또는 임가공 대금보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 우려가 있음.	- 유상 원재료의 구매 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최종 납품 목적물의 제조 또는 임가공 대금에서 공제하여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함.

1.2.8. 금형 도면 및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

- 하도급 거래 중 상품 및 금형의 제조 위탁 시, 발주서 상 급부 내용에 금형의 도면과 제조 노하우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납품과 함께 관련 도면을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유의점	행동지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도면 및 제조 노하우를 목적물과 함께 납품 받으려는 경우, 합당한 대가로 별도 매입하거나, 발주서에 해당 사항을 명확히 추가하고, 관련 대가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정해야함.	- 발주서의 급부 내용에 수급사업자의 도면 및 제조 노하우 이전을 동반시키려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하도급 거래 계약서에 해당 사항과 관련 대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하도급 거래 관련 유의사항

2.1.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현대 사회에서 대량 생산 체제가 정착되면서 기업 간 기능적인 분업 관계가 형성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전문화·분업화 됨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음.
- 특히 제조, 수리, 건설분야의 최종 완성품은 하도급거래를 바탕으로 생산되는데 위탁 받은 업체는 이를 다른 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2차, 3차의 연쇄적 하도급거래 관계가 형성됨.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상호 보완적인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특별법이면서 강행 법규이기 때문에, 사업자 간 합의로써 하도급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하도급법에서는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명확히 하고 있음.
-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 제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또는 중소기업청에 의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지배 또는 복종의 귀속 관계로 되는 경우 잦은 바,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사업자의 수직적인 불공정 거래 관계를 보다 대등한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함.

2.1.1. 제조 하도급 거래 주요 분쟁 세부 내역

주요 분쟁 유형	내용
공사 물량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가 견적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착공하여, 실제 대금 결정 시 적정가보다 저가로 결정됨. · 발주자의 도면 면적과 실제 하도급 공사 면적이 불일치하나, 차이 면적에 해당되는 대금을 미지급함.
공사 단가 결정 과정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 단가를 정한 계약의 체결 없이 작업 중간에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단가를 정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을 강요함. · 동일 업종에도 불구하고 업체별로 적용 단가를 달리하여 강제적으로 단가 계약을 체결함.
공사 단가 및 시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협의한 공사 단가나 시수(공사 시간의 수)를 일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인하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함.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실제 시공한 금액보다 삭감 지급 받음. · 계약 외 공사인 설치 및 철거 작업 등의 추가 공사 대금을 미지급받음.
하도급 대금의 부당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표준단가표의 단가와 가중치를 산정한 사전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함. · 하도급 대금을 삭감하기 위하여 표준단가표의 가중치를 협의 없이 임의로 일괄 적용함.
하도급 대금의 부당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 등의 원재료를 늦게 공급받음으로써 공사 대기가 발생하였으나,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공사이행보증금에서 부당 공제함. · 공기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 외 타사 인력을 투입하여 시공한 뒤, 이들의 인건비를 과다 산정하여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함.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물의 납품 후, 수급사업자가 시운전 책임을 회피하였다며,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고, 추가 공사 합의금도 지급을 유예함.

서면 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 전, 공사 물량 및 대금을 확정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만으로 공사에 착수함. ▪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사후에 소급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함.
불완전한 서면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의장 공사 임가공 위탁에 따른 개별 계약 서면을 미교부함.
임의 발주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블록 조립 공사 외에 탑재 공사로 발주를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타사에 위탁함.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어음 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함.
부당한 경영 간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실태 파악을 명목으로 임금 대장과 장부를 수시로 검사함. ▪ 원사업자의 계열회사의 회원 가입을 강요하고 해당 실적을 평가 자료에 반영함.
부당한 계약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타 업체에 위탁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에게 산업 재해 사고의 처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함. ▪ 선행 작업 지연 등의 이유로 작업 대기 비용 및 잔업 휴일 근무 등에 대한 비용을 미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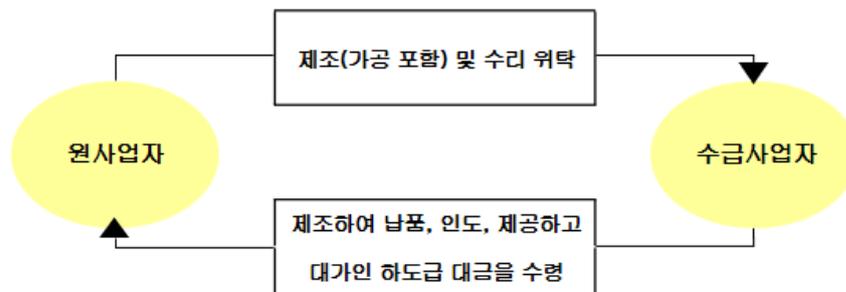
2.1.2.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례 분석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유형	내용
서면 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서만 제출 받고 선 시공하거나, 공사 시공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간에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함.
불완전한 서면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약서 외 개별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주문서만으로 공사를 시공하도록함.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상의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대금을 산정, 지급하지 아니함.
어음 할인료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어음 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함.
추가 공사 대금의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이에 따른 공사비를 미지급함.
지연 이자의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원금만 지급하고, 지연 이자는 미지급함.

2.1.3. 하도급 거래 분쟁 사전 예방책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견적서만 제출 받고 공사의 단가 및 공사 대금을 미확정한 상태에서 선행 시공을 요구한 후, 사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며 하도급대금 및 단가 결정 시의 견적 금액 보다 저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대금을 감액 분쟁이 주로 발생하므로, 사전에 하도급 단가를 충분히 협의, 결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상호 간 분쟁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선행 공사 작업 지연, 원자재 공급 지연, 공사 중단으로 발생하는 대기 비용 부담 귀속 주체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공사 중단에 따른 위약금의 공제 여부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함.
- 작업 중 도급 장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소모성 공구 및 재료 비용 부담 귀속 주체에 계약서에 명시하여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해야함.
- 현장에서 실무자 간 추가 공사 등에 대해 임의적으로 구두 협의 하여 사후 추가 공사 완료 후에 이에 관한 증빙 서류 없이 대금을 청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공사량 및 그 대금 지급 조건은 서류화 해야함.

2.2. 하도급 거래의 정의



-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을 받은 것을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있음.
- 반드시 원도급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형식상 (원)도급 관계로 보이지만

도급인 자신이 직접 제조, 용역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그 중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법에서 의미하는 하도급 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즉, 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 거래”로 보고 있음.

2.2.1. 제조위탁

2.2.1.1. 제조 위탁의 개념

- 제조 위탁: 회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형상·디자인·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 포함)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함.
- 업(業)으로서: 회사가 어떤 행위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제조: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인 물품에 공작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함.
- 물품: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음. 물품 그 자체의 제조 위탁은 일반적으로 제품 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 형태의 하도급 거래임.
- 반제품: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제조물을 말함.
- 부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대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물을 말함.
- 부속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부착 시키거나 목적물인 물품에 부속시켜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을 말함.
- 원재료: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를 말함.
-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제의 물품을 말함.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하게 하려고 위탁하는 경우의 금형도 포함됨.
- 규격·표준품을 구입은 원칙적으로 제조 위탁 대상이 아니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격·표준품일지라도 부분적으로 원사업자를 위해 가공 등을 가미한 경우 대상이 되며, 카탈로그 제품

등일지라도 범용성이 낮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탁을 받을 때부터 제조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경우 “제조 위탁”에 해당함.

- 제조 설비가 없어 직접 제조 하지 않는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제조 위탁”에 해당함.

2.2.1.2. 제조 위탁의 유형

종류	내용
유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 주문 재료 등의 제조·가공 외주, 제조 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 외주 등이 포함되며,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 해당됨. ·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 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 재료,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됨. · 물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함)를 위탁하는 경우에, 조립 외주(제품 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 외주(기계 가공, 프레스·판금 등), 부품 외주(스프링 등), 금형의 외주 등이 포함됨.
유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제조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물품의 제조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됨.
유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 수리에 필요한 특수 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2.2.1.3. 제조 위탁 해당 여부 판정 기준

- 수급사업자의 “제조”가 원사업자의 “위탁”에 어느 정도 의존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상기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쟁점이 됨.
 - 위탁 목적물이 특정 원사업자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물이라 원사업자의 위탁에 의존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제조 가능한 경우일지라도, 어떤 특수한 거래 환경에서 그 제조 여부가 원사업자의 위탁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면 하도급법 상 제조위탁으로 인정됨.
 - 단순 임가공 위탁과 비대체물에 대한 제조 위탁 및 “위탁

- 과 제조 간의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대체물에 대한 제조 위탁까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
- 이제까지의 위원회 심결례를 통해 볼 때, “단순 임가공 위탁” 및 “비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규격화·표준화가 이루어진 대체물에 대한 제조 위탁 사건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심결 과정의 각종 기록을 통해 볼 때, 이 경우 위탁의 목적물이 단지 대체물이라는 이유로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거래 조건, 납품 비율, 생산물의 특성 등으로 인해 “위탁”과 “제조”가 어느 정도의 연관성 혹은 의존 관계에 있는가의 여부(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위탁 품목의 수급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속성 거래인지 여부, 위탁자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판매의 용이성의 정도 등의 종합적 고려)가 핵심적 판단 기준이었다고 판단됨.
 - 다만, ‘대체물의 제조 위탁’이 하도급법 상의 제조 위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의 “위탁”이 있어야 하는 점(다른 사업자가 이미 생산해 놓은 제품의 주문은 위탁이 아닌 주문에 해당), ② 위탁의 대상은 “제조”여야만 하는 점(청소, 지게차 등의 용역을 위탁하는 것은 제조 위탁에 비해당)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2.2.2. 수리 위탁

2.2.2.1. 수리 위탁의 개념

- 물품의 수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사업자가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를 의미함.

2.2.2.2. 수리 위탁의 유형

- 어떤 물품의 수리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수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함.
 - 예를 들면,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업자가 도급 받은 자동차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 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함.

- ▶ 예를 들면, 자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나 설비 기계에 부착되는 배선·배관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도 행하지만,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해당함.
- 사업자가 “그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서 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함.
 - ※ 단, 단순히 수리하는 능력이 잠재적인 경우에는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2.2.3. 법 적용 대상

2.2.3.1. 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대기업으로 분류된 법인의 경우, 3년 간 중소기업자로 인정함.
-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도 국내 제조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도급법 대상이 됨.
-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 항목에 도매, 소매 혹은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고, 회사에 규격품이나 표준품을 구매, 납품하는 업체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의 제외 대상인 것은 아님.
 - ▶ “회사”가 요구하는 세부적 규격에 의해 제조·납품했느냐 여부에 따라 하도급 거래 대상 구분되어야 함.

2.2.3.2. 대상 기간

-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하도급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건(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위반하는 경우,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다만,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지 동법 제24조의 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
 -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납품일을 의미함.

- 하도급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의미함.

2.2.3.3. 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 하도급법 위반 시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을 법에서는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해석 상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된 바 있음. (대법원 2011. 1.27. 2010다 53457)

2.3. 거래 단계별 하도급법 상의 규제 내용

- 하도급법 상 주된 의무사항

의무사항	개요
서면 교부 (하도급법 제 3 조 제 1~4 항)	- 원사업자는 발주 시 급부의 내용, 하도급 대금 및 지급 조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
서류의 작성, 보존 (하도급법 제 3 조 제 9 항 및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급부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 하여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 13 조 제 1 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하에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을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정할 의무가 있음.
지연이자 지불 (하도급법 제 13 조 제 8 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수에 따라 미지급액에 15.5%를 곱한 액의 지연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음.

- 하도급법 상 주된 금지사항

금지사항	개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 4 조)	- 동종 또는 유사품의 가격이나 시중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
수령 거부 등 금지 (하도급법 제 8 조)	- 주문한 상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
부당한 반품 금지 (하도급법 제 10 조)	- 수취한물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것

<p>하도급 대금의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 11 조)</p>	<p>- 사전에 정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p>
<p>하도급 대금 지불 지연 금지 (하도급법 제 13 조 제 1 항)</p>	<p>-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정한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는 것</p>
<p>할인 곤란한 어음 교부 금지 (하도급법 제 13 조 제 6 항)</p>	<p>- 일반 금융 기관에서 할인 받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음을 교부하는 것</p>
<p>물품 구매 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금지 (하도급법 제 12 조)</p>	<p>- 원사업자가 지정한 물품, 용역을 강제로 구입, 이용 시키는 것</p>
<p>부당한 경제 상의 이익 제공 요청 금지 (하도급법 제 12 조의 2)</p>	<p>- 금전, 노무의 제공 등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p>
<p>기술자료 제공 금지 (하도급법 제 12 조의 3)</p>	<p>-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것</p>
<p>부당한 급부 내용의 변경 및 부당한 재작업의 금지 (하도급법 제 16 조)</p>	<p>-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주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령 후에 부당하게 재작업을 시키는 것</p>
<p>보복 조치의 금지 (하도급법 제 19 조)</p>	<p>-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위에 알린 것을 이유로 거래 물량을 삭감하거나 거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p>
<p>유상 지급 원자재 등 대가의 조기 결제 금지 (하도급법 제 12 조)</p>	<p>- 유상으로 지급한 원자재의 대가를 당해 원자재를 이용한 급부에 관련된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보다 이른 시기에 상계하거나 지급하도록 하는 것</p>

2.3.1. 하도급 계약 체결 단계

2.3.1.1.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 시에 발주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
- 발주 시의 법정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원칙적으로 법정 기재 사항이 모두 결정된 상태에서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 교부하여야 함.
 - 단, 하도급법은 발주 서면의 양식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발주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정위는 하도급법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법정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업무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하도급 대금 (선금금, 기성금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 등을 포함)과 지급 방법 및 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기일 -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의 예외
 -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위탁 시 확정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재해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 등)에 해당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 정당한 사유와 확정 예정일을 서면에 적어야 함.
 - 동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 동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사유와 확정 예정일)을 적은 서면(하도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포함)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탁 일시, 양 당사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등)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적법한 서면 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기본 · 개별 계약서에 위탁 일자, 품명, 수량, 단가, 대금 지급 조건, 납기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기재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봄.
 - 빈번한 거래 시 계약서에 법정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건 별 발주 시에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 사항의 파악되거나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봄.
 - 기본 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봄.
 - 기본 계약서를 교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 위탁 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물품 매도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고, 객관적으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결정한 경우여야함.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방법에 의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는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경우와 기만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거래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가격을 말함.

- 부당한 하도급 대금에 관한 판단 기준은 '부당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판단함.
 -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정 시 내용, 수단과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재질, 공법, 운송, 대금 지급 조건 등 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더불어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및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거나, 그 과정에서 사회 통념 상 옳지 못한 것으로 인정 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 여부'는 ①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 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에 대해 ②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1) 목적물 등과 같은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2) 종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3)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4)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

거나 유사 업종의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을 상당 금액을 더한 대가, (5)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 관리 계획에 포함된 하도급 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 가격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보다 ③ ‘낮은 수준’(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차액 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하도급법 대금 부당 결정의 유형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협조 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의 예시	
-	2002년 9월경 정보통신사업분야의 2003년도 원가절감 목표액을 1조 7,433억원으로 수립 후, 내부적으로 단가 인하를 통해 1조 2002억원을 달성하기로 하고, 국내업체에 대하여 6,397억원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부품별 원가절감목표 설정하여 담당자별로 부여하고 일괄적인 단가 인하를 추진함.
➤	이 중 법 위반으로 적발된 OO 부품의 경우, 단가 인하 목표금액을 209억원으로 정하고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7개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인 단가 인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 선박 △△호선과 ◇◇호선을 각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시공 중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견적 가격(194,977천원)을 크게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 업체가 직전에 시공한 선박 □□호선의 계약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8.7%를 인하하여 115,500천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됨.
- 비공개 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인에게 선박 제조용 부품인 레벨 스위치를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낙찰된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격 협조 요청을 하여 수급사업자가 당초 최종가격으로 제시한 가격에서 당해 입찰의 최저가로 가격을 인하하였음.

2.3.1.3. 경쟁 입찰과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실행 예산)을 상회하여 예정가격 수준에 맞추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 예정가격은 하도급대금 상한가로써 의미가 있으므로 예정가격이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 아님.
 - 입증 책임: 당해 예정가격이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
- 저가 심의 후에 심의 기준에 미달하는 최저가 업체를 탈락시킨 뒤에 차순위 업체와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 저가 심의는 부실 시공 또는 공기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면 법 위반이 아님.
 - 전제 조건: 저가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에 공지한 경우

2.3.2. 하도급 거래 이행 단계

2.3.2.1.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 부당한 위탁 취소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후, ‘수급사업자에게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 시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함.
 - ‘수급사업자에게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를 말함.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 회생 절차의 신청 등 경영 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 ·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써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 또는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제조 등의 착수 또는 착공을 거부하여 정상적인 납기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위탁의 취소 사유가 하도급 거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그 취소 절차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 통념 상 옳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또는 그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 상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 서면이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봄)
 -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 후 위탁을 취소했는지 여부

부당한 발주 취소의 예시	
-	판매량 감소, 사양 변경, 모델 단종, 생산 계획 변경, 자금 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 취소, 발주 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 상황 또는 시장 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제조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지연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개발을 제조 위탁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 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부품에 대한 약정 물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 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위탁을 취소하면서 동의·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인사 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원사업자의 새로운 담당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 취소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사유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2.3.2.2. 부당한 수령 거부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 시 정한 납품 일자 및 장소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또는 인수하는 것을 거부 또는 지연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 계약 체결 및 수령 거부의 경위, 위탁 계약의 내용, 수령 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한을 두고 위탁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적시에 조달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가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납품 목적물 등의 품질, 성능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생산 또는 운송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적절히 관리를 하지 않아 목적물 등이 훼손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수령 거부의 예시

- 계약서에 위탁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 등의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 것인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상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장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성능의 하자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제조 등의 위탁 시 서면으로 목적물의 납기일을 정하지 않거나 납기일을 변경 하면서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어겼는지 여부가 분명 하지 않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일 단축을 통보한 후 납기일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기간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또는 원사업자가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해 목적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주 취소·발주 중단, 발주자·외국 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판매 부진·생산 계획 변경·사양 변경 등을 이유로 위탁 내용대로 제조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 일부 품목의 불량률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구두로 추가 위탁을 한 후 목적물의 일부는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당초 서면 계약서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며 위탁 사실을 부인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3.2.3.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 개선 등 정상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사업자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 또는 장비,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부당한 물품 등의 구매 강제 예시
- 원사업자 소속의 구매·외주 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요청에 대해 불응 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2.3.2.4. 내국 신용장 개설 의무 위반

- 원사업자는 수출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어야함.
-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하면 적법함.
- 내국신용장 미개설 사유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함.

적법한 내국 신용장 개설 예시
- 수급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의 내국 신용장 개설 은행에 연체 등을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 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 매도 확인서를 제출하고, 원사업자가 물품 매도 확인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경우로서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2.3.2.5.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위반

- 검사 결과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 위탁의 경우,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을 통지 받은 날을 말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이 진행됨.
-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사업자가 검사 비용을 부담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함.
- 제조업의 경우 대량 납품하는 경우 샘플 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 받은 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함.
 -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봄.

2.3.2.6. 부당 반품 금지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등을 반품할 수 없음.
- ‘부당 반품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 목적물 등의 범위, 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 조건, 검사 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 부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당한 반품의 예시	
-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대로 제조·수리 시공 또는 용역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발주자·외국수입업자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주 취소·발주 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 변경·모델 단종·판매 부진·재고 증가·보관 장소 부족 또는 소비 위축·경제 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않았거나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검사기준·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행위

-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의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해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 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2.3.2.7. 부당 감액 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시장 상황, 감액된 정도, 감액 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감액 정도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함.

정당한 감액 사유의 예시	정당하지 않은 감액 사유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되는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원사업자의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 지급 시 공제하는 행위 -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 시정명령 등으로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행위 -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 및 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운송조건, 납품기한 등의 거래조건을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의 발생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행위 - 당초 계약과 달리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이 있음.

-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감액 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감액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2.3.2.8. 부당 경영 간섭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됨.
-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행위가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인의 사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여부, 국민 경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비용 절감·품질 향상 등 효율성 증진 효과 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여건이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부당 경영 간섭의 예시	부당하지 않은 경영간섭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의 생산 품목·시설 등을 제한하는 행위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위탁한 하도급거래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와 계약한 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한 하도급 거래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 과정, 투입 인력, 재료 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다만,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 미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제3조의 3에 근거한 협약 체결 대상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 비율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 행위 ➢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 지원 행위 -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산재 보험료 산출을 위해 임금 대장을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위반 아님

2.3.2.9. 부당 보복 조치 및 탈법 행위 금지

- 원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 협조와 원사업자의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수주 기회 제한, 거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간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수급사업자가 신고, 조정 신청 등을 한 시점과 원사업자의 수주 기회 제한 등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 간의 격차, 해당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동종업계 다른 수급사업자들과 그 원사업자간의 거래 내용 및 상황, 해당 수급사업자와 그 원사업자간의 거래 이력, 발주자의 발주물량 축소 등의 거래 여건의 변화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부당 보복 조치의 예시	탈법 행위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상의 신고, 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 또는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기타 합리성·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일반적 거래 관행 상 통용되지 않는 수단·방법을 활용해 하도급법 상의 신고, 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 할인료 · 지연 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2.3.2.10.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정당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의 범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됨. 예컨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 시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원사업자가 완전한 상태의 기술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비밀준수 관련 사항,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 3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해당 협의의 서면 작성 및 교부’: 동 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①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는 등 강제성이 있거나 수급사업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 ② 기술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제공 및 활용 범위 등을 반영한 정당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③ 기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소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기 이전에 양사의 기명날인 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급한 경우 -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서면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함에 따라 그 사유와 대략적인 예정일을 기재하여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후 해당사항이 확정되면 그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지체없이 발급한 경우 - 기본계약서, 특약서 등에 서면기재사항 중 일부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나머지 사항을 기재하여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경우 -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목적으로 여러 건의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해야 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경우

- 부당한 기술 자료의 사용 및 제공
 -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기술 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전에 제공된 경우, 기술 자료 요구서에 적시된 기술 자료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기술자료를 사용·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부당한 기술 자료의 사용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 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 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 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 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 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2.3.3. 하도급 대금 지급 단계

2.3.3.1. 선급금 지급 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함.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증서(선급금 보증서)의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일수는 지연이자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음.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해야함.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7.5%) 또는 수수료(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한 수수료율)를 지급해야함.
-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판단 기준
 - 발주자가 특정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함.
 - 발주자가 특정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 계약 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함.

2.3.3.2.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환급액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위 기간(환급 받은 날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함.
 -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 이자를 부담함.

2.3.3.3.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불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함. 물품 등의 검사 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 지연이 됨.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목적물 수령일이 지급 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하도급법 상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
 - 어음 할인료 지급 의무: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함.
 - 지연 이자 지급 의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함
 - 60일(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15.5%)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연7.5%) 또는 수수료(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한 수수료율 적용) 지급함.
 - 어음 만기일 유지 의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보다 짧은 어음으로 지급해야함.
 - 현금 결제 비율 등의 유지 의무: 현금 결제 비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액에서 현금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이 일정할 경우: 당해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차 도급 대금을 지급받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음.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번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다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각각의 현금 비율을 산술 평균한 비율 이상으로 지급함.

2.3.3.4.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및 지급 의무

- 제조 · 수리 또는 용역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사유로 추가 금액을 지급 받고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납품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함.
 -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연 이자 및 어음할인료 규정 적용됨.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

조정 기준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감액 또는 증액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함.
- 개별품목별로 조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내역에 따라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 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함.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 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 기준 시점 이후의 잔여 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함.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 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물가 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 데 있어 물가 변동 조정 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금금은 물가 변동 조정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함.

2.3.3.5. 부당 대물 변제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2.3.3.6. 물품 구매 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2.3.3.7.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을 하여야함.

2.4. 발주자의 의무사항

2.4.1.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또는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함.
 -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해야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상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및 자재 대금 등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안됨.

-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 직접 지급해야할 금액의 확정
 - 직접 지급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성 청구에 따라 원사업자의 검사, 확인 또는 발주자 및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됨.
 -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범위로 함.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 대금이 직접 지급해야할 하도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주자는 잔여 공사 대금을 한도로 직접 지급함.
- 직접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원사업자의 필요 조치 이행 기간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부분 내지 물량 투입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 받은 때로부터 15일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제4호: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내지 물량 투입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 ※ 다만, 사업자가 위 기한 내 필요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이행 예정 시기를 적시한 소명 자료를 위 기한 내 공정위에 제출하여야함.

2.4.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 직접 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함.
- 직접 지급 시 공탁 사유가 있을 때, 공탁이 가능함.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한 부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 계약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함.
- 원사업자는 기성 부분의 확인 등 직접 지급에 필요한 조치들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함.

2.4.3. 가압류, 압류 및 전부 명령(추심 명령) 등과 직접 지급

- 가압류와의 경합 시, 직접 지급 우선 성립 요건
 - 시공 부분이 발생하여야함. (미시공분까지 보호하지 않음)
 - 가압류 전 3자 간 합의가 있는 등의 직접 지급 사유가 먼저 발생해야함.

- 직접 지급 사유 발생 후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 동 (가)압류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되므로 무효임.
 - 발주자는 (가)압류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함.
-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전 (가)압류 명령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 하도급법상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 대금 채권이 제3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위하여 보전되었으므로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 처리해야함.
- 특별법에 의해 우선권 있는 임금 채권 및 국세·산재보험료와 직접 지급 제도
 - 일반 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임금 채권 및 국세, 산재보험료 등의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체납 처분이 있기 전에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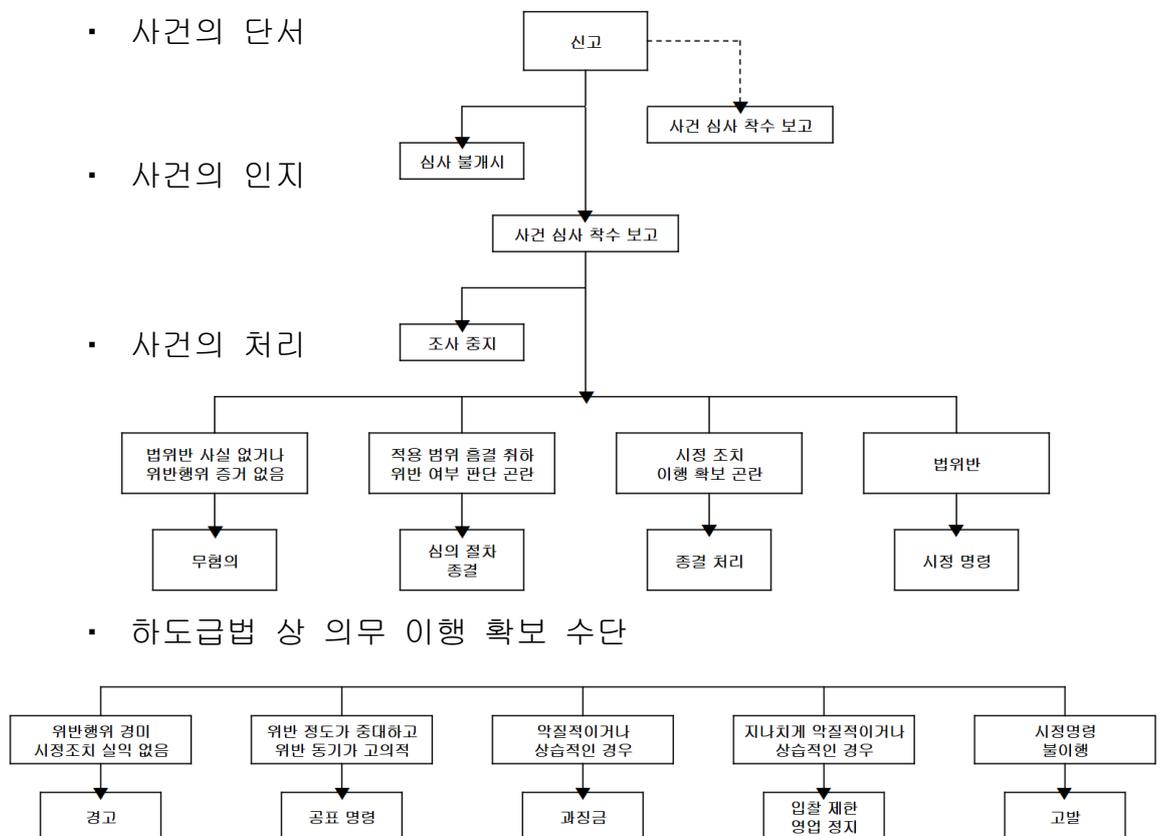
2.5. 위반 시 제재

2.5.1. 사건 처리 절차

- 사건의 단서

- 사건의 인지

- 사건의 처리



2.5.2. 과징금

2.5.2.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함.
- 원칙적 부과 대상
 -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 금액이 큰 경우
 - 위반 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많아 향후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징금 부과 면제 대상
 -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 협약 평가 우수 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자율 준수 노력, 외부 법률 자문 등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다음의 어느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위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관련 항목	구체적 사유
선급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의 지급 -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에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자의 지급 - 하도급법 제6조 제3항에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의 지급
하도급 대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 5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의 지급 -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의 지급 - 하도급법 제14조 제8항에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자의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제14조에 위반하여 직접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세 등 환급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제15조 제1항 및 2항에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관세 등 환급 상당액의 지급 - 하도급법 제15조 제3항에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자의 지급

중대성 위반 행위 범위	발생 범위	0.2	위반 행위 당시에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반 행위 당시에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비율이 30% 이상이고 70% 미만인 경우	
	피해 규모	0.2	위탁 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 대금의 규모, 거래 의존도·기간·방식 등 당사자 간 관계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 정도, 수급사업자의 절대·상대적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 업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세부 평가 기준표에 의거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 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구분한 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 또는 부과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정함.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 기본 산정 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 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함.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 위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 산정 기준을 도출함.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2.2 이상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1.4 미만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차 조정
 - 위반 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계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산정 기준에 가중함.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건은 제외)
 -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 또는 벌점 누계 점수 2점 이상: 100분의 20 이내

- 과거 3년간 3회 법 위반 또는 벌점 누계 점수 2점 이상: 100분의 10 이내
-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의한 조정
 -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50개 이상 70개 미만: 100분의 10 이내
 -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70개 이상: 100분의 20이내
- 2차 조정
 - 가중 사유 및 비율
 - 위반 사업자의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100분의 20이내
 - 위반 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동시에 심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경우로서 '위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① 1년 이상 ~ 2년 미만: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미만
 - ② 2년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
 - 단, 위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 행위의 실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위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며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까지 위반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봄.
 - 감경 사유 및 비율
 -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 ① 수급사업자의 피해의 모두 구제·위반 행위 효과의 실질적 모두 제거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 ② 수급사업자의 피해액 50% 이상 구제·위반 행위의 효과의 상당 부분을 제거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 ③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반 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자신의 책임 없이 위반 행위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이내
 - ④ 위 ① ~ ③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진 시정이 조사 개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 감경률의 축소 가능함.
 - 조사에 협력한 경우

- ①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된 위반 행위 사실의 인정 또는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 ② 위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 위반 행위 사실의 인정 또는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 부과 과징금의 결정
 -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이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2차 조정된 금액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음.
 - 위반 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대해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을 조정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2.5.3. 벌점 부과

-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함.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

경고 (서면실태조사)	경고 (신고/직권인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	0.5	1.0	2.0	2.5	3.0

- 벌점 감경 기준 (1회만 경감)

요건	인센티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90% 이상	과거 3년간 점수누계에서 2점 감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70% 이상 90% 미만	과거 3년간 점수누계에서 1점 감점
현금 결제 비율 100% (직전1년)	과거 3년간 점수 누계 1점 감점
현금 결제 비율 80% 이상 (직전1년)	과거 3년간 점수 누계 0.5점
입찰 정보 공개 비율 80% 이상 (직전1년)	과거 3년간 점수 누계 1점 감점

입찰 정보 공개 비율 50% 이상 (직전1년)	과거 3년간 점수 누계 0.5점 감점
자율 준수 프로그램 최우수 (직전1년)	과거 3년간 점수 누계 2점 감점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우수 (직전1년)	과거 3년간 점수 누계 1점 감점
하도급거래 평가 모범 업체 선정 (직전1년)	과거 3년간 점수 누계 3점 감점
하도급관련법령 준수 등 협약 및 협약 이행실적 평가 최우수	과거 3년간 점수 누계 3점 감점
하도급관련법령 준수 등 협약 및 협약 이행실적 평가 우수	과거 3년간 점수 누계 2점 감점
하도급관련법령 준수 등 협약 및 협약 이행실적 평가 양호	과거 3년간 점수 누계 1점 감점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50% 이상 지급	과거 3년간 점수 누계 1점 감점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50% 미만 지급	과거 3년간 점수 누계 0.5점 감점

2.5.4. 손해 배상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 다만, 원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부당 위탁 취소의 금지·부당 반품의 금지·감액 금지·기술 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보복 조치의 금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원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5.5.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 공정위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하도급 벌점(누계 점수)이 4점을 초과하는 원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2.6. 하도급 거래 단계별 확인사항

2.6.1. 서면(서류) 보존 기한, 불공정한 발주 변경 및 취소

확인사항

- 거래 기본 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였는가?
-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불공정한 조항의 유무를 검토하였는가?
- 계약서 작성시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하였는가?
- 수급사업자 선정 검토 시 업체정보(자산, 종업원, 매출액, 종목 등)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는가?
- 생산계획의 통보를 발주서로 대신하고 발주서를 미교부하는 행위는 없었는가?
- 추가 발주 및 납기 변경 등 발주 내용 변경에 따른 발주서 미교부는 없었는가?
- 불확실한 발주 행위(위탁물 내용, 단가, 수량, 납기 미정 등)는 없는가?
- 발주한 내용의 변경 및 취소 발생 시, 수급사업자와 합의 후 처리하였는가?
- 무리한 납기 준수 또는 제조 불가능한 위탁 등의 발주행위는 없었는가?
- 발주서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거래계약서 없이 발주서를 발행하지 않았는가?

2.6.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 결정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는가? ▪ 단가 결정시 복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하였는가? ▪ 물가 수준을 반영한 단가 결정이 이루어졌는가? ▪ 단가 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가? ▪ 원가 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는가? ▪ 원 도급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단가 결정은 없었는가? ▪ 수의 계약시 저가 하도급 기준 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 적용은 없는가? ▪ 단가 결정시 검토한 증빙 등의 보관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였는가?

2.6.3. 부당한 수령 거부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물 수령 후 즉시 양식화된 물품 수령증을 교부하였는가? ▪ 물품수령증을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가? ▪ 수출품의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수증을 교부하였는가? ▪ 고객(원발주자 등)의 클레임,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주 취소한 경우 사후 처리로 기발주한 물량을 전량 인수(수령) 하였는가?

2.6.4.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확인사항

-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켰는가?
- 검사 기준 및 방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였는가?
-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내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검사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에 대한 사유를 검사 방법 협의 시 합의했는가?
- 검사 기간에 대한 합의서 및 10일 초과 사유 증빙을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검사 기간 초과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고 있는가?
- 당초 합의된 검사기준 및 방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하지 않았는가?
- 검사 기간이 초과된 후 반품되는 물품의 사유서(증빙)를 보관하고 있는가?

2.6.5. 부당 감액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않는가? ▪ 계약서에서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대금 지급 시 부당하게 조정하지는 않았는가?

2.6.6. 기타 불법 및 탈법 행위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 위탁물과 관계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 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편법으로 이행 조치를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 생산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가?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 물량 축소 또는 거래중단을 하지 않았는가? ▪ 협력업체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2.6.7. 관세 환급액 지급

확인사항

- 협력업체에게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세환급액을 지급하였는가?
- 수출 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비용(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협력 업체와 합의없이 부당하게 부담시키지는 않았는가?

2.6.8.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60일)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이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로부터의 요청 없이 하도급거래대금과 매출거래대금을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 거래 결정한 후 대금지급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어음의 만기일이 비계열회사와 다르지 않는가? ▪ 위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없는가? ▪ 대금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2.6.9. 대물 변제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자사 및 타사의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거래 대금과 매출거래대금의 상계처리를 희망하는 요청없이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상계처리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상계처리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3.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3.1.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거래상대방에 대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 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의 예시
-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 체결 시 자기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
- 자기가 구입하는 강관 등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3.2.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협력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납품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기·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간접비를 시공업체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 하는 행위 - 긴급 공사에 대하여 선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은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납품 지시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3.3. 부당한 거래 거절, 중단 행위

-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단절 또는 거래를 정지하거나 거래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부당한 차별 취급 행위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협력업체가 다른 거래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당해 업체의 구매를 중단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귀책이나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납품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토록 하는 행위 - 계열회사와 거래할 목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협력업체가 경쟁사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경쟁사업자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 또는 중단하는 행위 - 제품구매 또는 시공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불합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지명 또는 제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특정사업자를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3.4. 부당한 차별 취급 행위

-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내용과 관련 부당하게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함.
 - 거래 조건 차별(이행 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 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 조건, 대금 지급 조건 등이 포함됨.
- 거래지역 차별이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의 가격은 현저하게 내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음으로써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의 경쟁 사업자에게 타격을 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음.

부당한 차별 취급 행위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 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비중에 따라 어음 지급 기간 등 대금 결제 비중을 달리하는 행위

3.5. 거래 강제 행위

- 협력업체 등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할 경우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거래 강제 행위의 예시	
-	회사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회사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 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3.6.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 계약 조항의 삭제 ▪ 법 위반 사실의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4. 경쟁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4.1. 경쟁사 배제 · 사업 활동 방해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해질 경우,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수준의 저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4.1.1. 경쟁사 배제 · 사업 활동 방해의 세부 유형

- 부당 영매 행위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 영매의 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됨.
 - 계속적 영매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

짐을 의미함.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여부는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함. ① 제조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제조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함. ② 매입원가는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계열회사 관계나 제휴관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간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수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일시적 영매란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이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함.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속적 영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함.

▪ **부당 고가 매입**

- 통상 거래 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통상 거래 가격이라 함은 당시 시장에서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말함. 인위적으로 제품이나 원재료의 품귀를 발생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입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물량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므로, 고가 매입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 고가매입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음.

4.1.2.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 계약 조항의 삭제 ▪ 법 위반 사실의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4.2. 경쟁사와의 부당한 합의 (부당한 공동 행위)

-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함.

4.2.1. 합의의 정의

- 합의는 ‘의사의 합치’를 말하지만, 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가 일치 있었다는 상호 간의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양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의미함. 다만 의사의 연락이나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의 합치 내지는 공통의 인식에 이르러야함.
 - 합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방식이나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수준에 따라 입증되는 합의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음. 다만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고 단순히 상호 인식하는 가운데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시장행위가 동조화되는 경우인 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나 동조적 행위는 반드시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존재한다는 증거만으로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함.
 -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동법 제19 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서울고법 2000. 11. 16. 선고 99누6226 포스틸 등 4개 강판제조업체의 운송비 공동결정행위 건).

4.2.2.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기간

-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참가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봄.
 -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봄.
-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
 -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로서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 공동행위의 구성사업자가 합의 탈퇴의사를 명시적 내

- 지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실제 그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구체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 탈퇴 의사 표시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합의 탈퇴 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가격 인하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 탈퇴 의사 표시만으로 공동 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합의에 참가한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경우 그 독자적인 가격 결정일을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로 봄.
 -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 가격 경쟁이 있는 등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될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의 마지막 날에 실행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봄.
 - 공동 행위가 심의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심의일에 그 공동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봄.

4.2.3. 부당한 공동 행위의 세부 유형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행위
 -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함.
 - 가격이라 함은 명목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 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의 가격에 포함.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됨.

-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일률적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와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됨.
- 거래 조건의 결정 행위
 - ‘거래조건’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함.
 -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량의 제한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가 포함됨.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됨.
- 거래 지역·거래 상대방 제한 행위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 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 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 사업자하고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 신/증설이나 장비 도입의 방해·제한 행위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상품의 종류·규격의 제한 행위
 -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됨.
- 영업의 주요 부문 공동 관리 회사 설립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상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함.

5. 계열사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지원 행위 등)

5.1. 부당 지원 행위

- 계열 회사, 특수 관계인, 비계열회사에게 가지급금, 대여금, 부동산, 기업어음, 주식, 인력 등을 아주 높은 가격이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이들을 지원해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부당 지원 행위의 예시	
-	우량한 회사(지원주체)가 부도직전에 있는 계열사(지원객체)에 게 시장금리보다 현저하게 저리의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계열증권사(지원객체)에 주식투자의 의도가 없이 증권에탁금 명목으로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치하는 경우 혹은 부실한 계열사(지원객체)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
-	사업자(지원주체)가 부실한 계열사(지원객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 그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로(즉,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혹은 계열사(지원객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	사업자(지원주체)가 계열사(지원객체)의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 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관계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행위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불공정한 경우

5.2. 부당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5.2.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함.

5.2.2.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

타 자산(이하 “자산”이라 함)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함. 또한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 행위에 포함됨.

5.2.3.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함. 또한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됨.

5.2.4. 상품, 용역을 거래한 경우

- 거래 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와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함.
 - 상품·용역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중 거래 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 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상품·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함.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와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함.

5.2.5. 인력을 제공한 경우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함.

5.2.6. 거래 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지원 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 객체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함. 또한 거래상 지원 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 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 행위에 포함됨.

5.3. 부당 지원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 지원 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의 관계, 지원 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거래 규모와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 횟수, 지원 시기, 지원 행위 당시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 능력과 경쟁 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 행위 전후의 지원 객체의 시장 점유율 추이 및 신용 등급의 변화 정도, 시장 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이러한 지원 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 행위에 단순한 사업 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해당 지원 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함.

5.4. 계열사를 위한 차별 취급

- 계열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계열 회사와 다른 거래 상

대방을 현저하게 차별하는 행위임.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의 판단 기준으로서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 행위의 동기, 효과의 귀속 주체,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야함.

5.5.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 계약 조항의 삭제 ▪ 법 위반 사실의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

III. 하도급 4대 실천사항

1. 바람직한 계약 체결

1.1. 목적

-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수급사업자가 회사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수급사업자 사이 계약 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실천 사항의 구성

- 이 실천사항은 계약 체결 전 회사가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각 계약 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 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됨.

1.3. 계약 체결 인프라 구축

1.3.1.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기준

- 회사는 회사의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 방식을 선택함.

- 회사는 물품의 중요성, 거래 가능 상대방의 수, 거래 경험, 전체 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 체결 방식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음.

계약체결방식	요건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의 가격 급등 등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현재의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특정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경쟁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제한경쟁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공사 실적이 요구되는 경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계약의 경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의 경우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 구매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시 그 제한 사항과 기준을 명시해야함.
지명경쟁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입찰대상자가 5인 이내인 경우 규격 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환경 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1.3.2. 거래 희망 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 회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 업체에 대해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 획기적인 기술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회사 홈페이지 또는 협력업체 구매 포털을 통해 제안할 수 있음.

1.4.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계약 체결

1.4.1. 계약체결 준수 사항

1.4.1.1. 서면의 사전 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함.
- 계약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계약의 내용,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를 먼저 교부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하여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함.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를 교부함.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함.

1.4.1.2.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 지급 방법·재료 가격·노무비 또는 시가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 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에 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함.
-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 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정 단가를 정하는 때로 소급하여 정산함.
-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적인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 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한 작업의 여건, 협력업체의 규모, 기술 수준 등 특성에 따라 임률을 책정함.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함.
- 단가 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함.

1.4.1.3. 명확한 납기

- 업종별 특성 및 정상 관행에 적합하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정함.
-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해야하며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함.
-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배상함.

1.4.1.4. 객관적 검사 기준

- 납품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타당한 검사 기준 및 방법을 정함.

- 납품 등이 있는 때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해야 하며, 사전에 정한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함.
- 검사 전 또는 검사 기간 중의 발주 부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함.

1.4.1.5. 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 일정

-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 목적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경우 용역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협력업체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함.
-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함.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함.
-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함.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함.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함.
- 납품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납품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함.
-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 구매 전용 카드의 경우는 카드 결제 승인일, 외상매출

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송일,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함.

- 납품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 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협력업체에게 지급함.
- 대금을 납품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함.

1.4.1.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 원인 규명 주체, 하자 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 부담 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거하여 반품 처리함.

1.4.1.7. 계약 해제·해지

-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함.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거래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거래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할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고, 이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음.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부품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대방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
-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사항으로 함.
 - 기술자료 예치제도: 거래 상대방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함.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 발주는 가급적 지양하고, 분기별 예측 가능 물량을 제시해야 함.

1.4.2. 계약체결 지양 사항

1.4.2.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시 확정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세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면서 미확정 사유와 확정 예정일을 기재하지 않고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
- 세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한 후, 예외 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로 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 위탁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 받고 15일 이내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은 행위
- 구두로 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 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 계약서 또는 작업 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 공사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법정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입찰 내역서, 낙찰자 결정 품의서, 견적서, 시방서 등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1.4.2.2.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 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고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허위 견적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 항목의 합계액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 가격 및 노임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지급 조건, 거래 수량, 작업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적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견적 한 후, 실제로는 소량을 발주하면서 종전의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없이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 목적물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시공해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 특별 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의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2.3. 구두에 의한 제안 시 제시 요구 또는 개발 의뢰 행위

- 설비 완료 혹은 생산 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1.4.2.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회사가 위탁한 납품 목적물 등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거래의 목적과 관계 없이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회사 또는 회사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 목적물 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 등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1.4.2.5. 추가 공사비 미반영 행위

- 공사완료 후 추가 물량 발생시 회사에게 추가 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 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 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사정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중지 또는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 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1.4.2.6.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미조정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통지(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1.4.2.7.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미조정 행위

- 협력업체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 개시를 통보한 후 실제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협력업체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경우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1.4.2.8.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협력업체로 하여금 회사 및 회사가 지정한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는 제외)

1.4.2.9.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해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회사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 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1.4.2.10. 부당 특약 행위

-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회사의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1.5.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 이행

1.5.1. 계약 이행 준수 사항

1.5.1.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민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하여 해결함.

1.5.1.2. 단가 인하 시 충분한 사전 합의 및 서면 발급

- 원자재의 가격 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하는 단가 인하의 경우, 단가 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

1.5.1.3. 계약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 사양 요구 등 계약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함.

1.5.2. 계약 이행 지연 사항

1.5.2.1.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 · 시공한 납품 목적물과 위탁 내용의 상이 여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 · 외국수입업자 ·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 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 요구가 있었음 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하였는데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타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 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1.5.2.2. 부당한 반품 행위

- 회사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주 취소되거나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회사에서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회사에서 공급하는 원재료 공급 지연에 의한 납기 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 외국수입업자 ·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해당 협력업체 외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협력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반품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납기·공기 지연이 있었으나 회사가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 후 납기·공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1.5.2.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도하게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회사로부터 사게하거나 당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 목적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 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협력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5.2.4.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행위

- 거래의 개시 또는 대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1.5.2.5. 회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

- 회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1.5.2.6. 부당한 대물 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1.5.2.7. 보복 조치 행위

-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1.5.2.8. 탈법 행위

-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 할인료 · 지연 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1.5.2.9. 물품 등 구매 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1.5.2.10. 물품 구매 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거나 회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지급기일에 앞서 구매 · 사용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거나 회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회사가 제3자에게 해당 물품 또는 장비를 등을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1.5.2.11. 기술 자료 제공 강요 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의 기술자료를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함.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 정보
 - 그 외의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 자료를 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를 의미함.

2. 협력업체 선정·등록

2.1. 목적

- 본 실천사항은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상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일반 사항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2. 용어의 정리

- “협력업체”란 회사의 제조·건설·용역 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급사업자도 포함됨.
- “협력업체 풀(Pool)”이란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함.
- “협력업체 선정”이란 회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
- “협력업체 운용”이란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등록 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2.3.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2.3.1. 기본원칙

- 본 실천사항은 회사가 운용 중인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과 관련하여 자율·투명·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회사에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3.2. 협력업체의 선정 기준, 절차, 결과의 공개

- 협력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등록(갱신 등록 포함) 심사 개시 30일 전에 사업장, 전자 매체(회사의 구매 포탈) 등에 15일 이상 공개 해야함.
-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 갱신 등록 대상 업체에 대해 45일 전에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함.
- 협력업체 선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해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함.

2.3.2.1. 선정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구체 · 명확하게 제시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함.

2.3.2.2. 선정 기준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의 선정 기준은 위탁할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함.
-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함.
- 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해야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 업체와 신규 등록 업체 간 선정기준차별을 두지 말아야함.

2.3.2.3. 공평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 협력업체로 선정 · 등록된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와의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 및 차별 받지 않아야 함.

2.3.2.4.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절차의 공개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전자 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함.

2.3.2.5.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함.

2.3.2.6.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함.

3.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3.1. 목적

- 이 실천사항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일반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실천사항

3.2.1. 기본원칙

- 이 실천사항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회사의 내부 심의 위원회의 자율 · 적절 ·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3.2.2.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내부 심의위원회는 회사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음.
- 기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심의 기구 등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음.

3.2.3.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내부 심의위원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안

-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 내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함.
 -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 준수 여부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준수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준수 여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위반 여부
 -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위반 여부
-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의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함.
-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함.
-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익명성을 보장함.
- 심의 안건 중 하도급법 등 관련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함.
-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함.

4. 서면 발급 및 보존

4.1. 목적

- 본 실천사항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회사와 협력업체가 하도급법 상 서면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관련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 문화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해 공정위가 운영해야 할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4.2. 실천 사항의 구성

- 이 실천 사항은 ①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각종 서면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③ 서면 발급·보존 관행의 정착과 촉진을 위한 공정위의 시책 내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4.3.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 발급에 관한 사항

4.3.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 회사가 하도급법 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하는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야함.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 및 발급해야함.
- 서면 기재 사항
 - 하도급 계약서에는 실제의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사항을 기재해야함.

법적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금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서면 발급 시점
 - 회사는 하도급 거래 개시 전 상기 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교부해야함.
- 서면 발급 방법
 -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거나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함.
 -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 서면 미발급에 해당함.
 -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음.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Web)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예외

- 아래와 같이 하도급 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 발급 시점과 다르게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거나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함.
 - 하도급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함.
 -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발급할 수 있음.
 - ①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 회사가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 관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 가능함.
 - ※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사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만함.
 - ②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 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 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작업 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 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업체가 회사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함.

- 추가 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그 대금이 상당함에도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 지시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 시공 과정에서 추가·변경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사이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특칙

- 하도급 계약의 추정
 -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포함) 협력업체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 일시, 양 당사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협력업체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1]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함.
 -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함.
 - 회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2]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함.
 - 만약, 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 상기 위탁 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회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으로 함.
- 공동 도급 계약의 경우: 공동 이행 방식의 공동 도급 계약의 경우, 공동 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 관련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표 회사가 공동 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함.

4.3.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함.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 결제,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 조건, 규격, 재질, 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 계약서에 기재하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 특약 또는 발주 내용에 의거하여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 당해 서면이 협력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봄.
- 서면 기재 사항
 -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함.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 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 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함.
 - 권리 귀속 관계: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 자료의 현재 권리자,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함.
- 서면 발급 시점
 - 감액을 하기 전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해야함.
- 서면 발급 방법
 -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거나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함.
 -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음.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Web)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4.3.3. 기술자료 제공 요구 서면의 발급

-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 시, 그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해야함.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 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의 기술 개발 또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 조건 충족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회사가 하도급 거래 도중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지도, 품질 관리, 성능 테스트, 공동 특허 출원, 특허 출원 지원, 공동 기술 개발, 납품 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 자료 임차 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계약 상의 교부 조건이 발생하여 회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서면 기재 사항
 - 기술 자료 제공 요구 서면에는 기술 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의 목적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와 기술 자료 대가, 기술 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 방법, 기타 회사의 기술 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함.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 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 간 체결한 비밀유지 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함.
 - 권리 귀속 관계: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 자료의 현재 권리자,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함.
- 서면 발급 시점
 - 기술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 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함.
- 서면 발급 방법
 -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거나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함.
 -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음.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 회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 다만, 회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음.
 -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 회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 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감액되는 경우,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상기 통지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함.
- 서면 발급 방법
 -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거나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함.
 -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음.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Web)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4.4.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 회사와 협력업체는 상기 4.3. 이하의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의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하며, 그 대상 서면은 다음 표와 같음.

번호	보존 서면 대상	비고	
1	기본 계약서 (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 3 조	의무 발급 서면
2	하도급 계약 확인 서면	하도급법 제 3 조 제 6 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 11 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 증명서	하도급법 제 8 조	
6	검사 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 9 조	
7	계약 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 16 조	
8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주요 하도급거래 내용 등 기재 서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 결제일,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10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11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원재료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5 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조정 협의를 신청한 경우, 그 내용 및 조정 대금과 조정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8 호	

-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해당 서면이 발급 · 품의 ·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및 송 · 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함.
- 회사와 협력업체는 하도급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고, 하도급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기일을 의미함.
 - 제조·수리·용역 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 협력업체가 회사에게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 인도한 날
 - 용역 위탁 중 역무의 공급 위탁: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 위탁: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계약이 해지 또는 중지된 날

IV.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1.1. 공정거래법 유의 및 금지사항

1.1.1. 거래 거절 행위

- 특정 협력업체에게 상호 협의 없이 일시에 거래 물량을 중단, 축소, 또는 계약 해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협력업체의 매출 부진 우려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 및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거래의 상대방 및 거래 지역 제한 등 경쟁 제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거절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 해지 전 협력업체에게 신규 거래처 선택 기회 등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거래 약정 체결 후, 약정 기간 내 또는 이미 투자 비용이 많이 투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 중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1.2. 차별적 취급 행위

-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판매업자에게만 지불 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공급자의 입장에서 가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판매업자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공급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거나 지불 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1.1.3.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의 임직원의 선임, 해임, 변경 관련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가 타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1.1.4. 불이익 제공 행위

- 협력업체와 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안됨.
- 회사가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 시, 협력업체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안됨.
- 계약 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오직 회사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안됨.
- 계약서의 내용을 회사만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안됨.
-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 지급 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면 안됨.

1.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1.2.1. 구매 단계

- 협력업체에게 위탁 목적물에 제조 또는 가공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게 위탁 목적물의 제조 또는 가공에 필요한 제조의 설비 구입처를 제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게 위탁 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

- 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경영 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 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 간섭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 회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허위 자료 및 허위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 생산 기술 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 등을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가?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중단을 하지는 않는가?
 - 협력업체가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
 - 사전 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거래물량 축소를 하였는가?
 - 협력업체의 경영자 및 종업원에게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협력업체가 대내외 창구를 통하여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았는가?

1.2.2. 재정 및 회계 단계

- 회사 자금의 조기 집행을 명분으로 협력업체에게 부당한 거래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대금 지급 시기에 협력업체가 수령하지 않은 대금을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 채무 관리를 목적으로 회사의 그룹사와 비그룹사 간 차별적 취급을 유도하는 전사적 지침이 영업 부서에 있지는 않는가?

2.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2.1. 하도급법 유의 및 금지사항

- 실제 하도급 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지 말아야함.
- 추가 공사 시 해당 범위가 구분되어야 하며, 비용이 상당히 추가된 경우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 지시서 등을 교부하여야함.
- 하도급 관계 서류들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함.

- 협조 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지 말아야함.
-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허위 견적 제공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함.
-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함.
-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함.
- 대금 지급 조건, 거래 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지 말아야함.
- 하도급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함.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전에 양 당사자 간 계약에서 정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납품 목적물의 수량을 거부하지 말아야함.
-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목적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원사업자는 이미 발주한 물품에 대해 수량을 임의로 거부하지 말아야함.
- 원사업자의 입장에서 검사 물량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검사 기간이 10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0일 경과 시 납품된 목적물은 원사업자의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됨을 유의해야함.
- 불가피할 사정으로 검사가 10일을 경과할 것이 예상될 시,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무국에 문의해야함.
-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함.
- 회사가 수급사업자 외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다면 이를 반품하지 말아야함.
- 계약서 등에서 하도급 대금의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함.
- 하도급 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감액하지 말아야함.

- 회사의 손실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함.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함.
- 회사의 경영 적자 또는 판매 가격 인하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함.
- 납품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공사에 필요한 물품, 부자재 등을 회사로부터 구매하거나 또는 관련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 구매 또는 사용 대금 이상의 금액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지 말아야함
-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회사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 사용료를 공제하지 말아야함.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일정한 금전 혹은 노동력의 제공을 강요하지 말아야 함.
- 하도급 거래의 개시 또는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말아야함.
- 수급사업자에게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며 금전이나 노동력을 요청하지 말아야함.
- 수급사업자의 자신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회사가 개입하여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인사에 간섭하지 말아야함.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회사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대비 납품 여부 등 하도급 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회사가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 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를 제한하지 말아야함.
-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에 따라 행동한 후, 수급사업자와 이면 합의 등을 통해 그러한 조치를 철회하지 말아야함.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 만기일이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경우 어음할인료(연 7.5%)를 지급하여야함.
- 하도급 대금은 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2.2.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관련조항	체크리스트 (위반유형)	확인 방법
제 3 조 서면 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가? ▪ 서면은 사전에 교부하였는가? ▪ 교부 서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이 기재되었는가? ▪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가? ▪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은 교부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계약서 내용 검토

제 4 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이 결정되지 않았는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협상하여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적 금액과 계약서 상의 비용 내역 비교 검토 경쟁입찰인 경우, 업체별 입찰가와 낙찰가 비교
제 5 조 물품 등 구매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에게 회사의 물품 구매 등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확인
제 6 조 선급금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급금은 적정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선급금이 지연 지급 되지는 않았는지? 선급금은 법정 지급 기일 내 지급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받은 선급금과 지급한 선급금을 비교 검토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아닌지 확인
제 8 조 부당한 위탁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의 취소 사유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 확인
제 11 조 부당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시공 물량은 늘었으나 계약 금액은 변경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 시 정한 금액을 추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제 12 조 물품구매 대금부당 결제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 목적물의 제조, 시공, 가공 등에 필요한 물품 구매 대금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투입한 물량 가액 이상을 기성금 등에서 차감 또는 공제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확인
제 13 조 하도급 대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 지급 기일을 지키고 있는지? 현금 결제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어음 만기일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연 이자는 지급하고 있는지? 어음 할인료는 지급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 원장, 어음 대장 및 구매 카드 등 약정서 확인
제 13 조 의 2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은 하고 있는지? 보증 금액은 적정한지?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지?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증권을 받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가 지행 및 계약 이행 증권 확인
제 16 조 설계변경 하도급 대금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변경 및 ESC와 관련 계약 금액을 조정하였는지? 계약 금액 조정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계약서 상 불공정 특약을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서 및 대금 지급 내역 등 확인
제 17 조 부당한 대물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는 있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계약서 상 하도급 대금을 대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대물 가치가 하도급 대금에 상응하는지 확인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2. 31.부터 개정 시행한다.[1 차개정]